

#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농업협력 전망

김영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kyhoon@krei.re.kr

## I. 위기에서 비핵화·평화정착 협상으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한반도 정세는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올해 초 개최된 평창올림픽 직전까지 한반도 위기설이 돌고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반전이 아닐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 후 한·북·미 3국은 적극적인 특사외교를 통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도 실현시켰다.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는 남북, 북미 간의 고위 실무회담이 이미 열렸거나 혹은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유예, 미군 전몰자 유해의 송환,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상호 간에 성의를 보이는 조치들도 뒤따르고 있다. 이는 모두 향후 대화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요소들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다차원의 신고·사찰·폐기·검증 과정인 만큼 장애물이 없을 수 없다. 그만큼 협상 과정에서 서로 따져 봐야 할 일도 많다. 또 ‘우호적 환경’의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적절한 경제협력에 관한 요구와 검토도 예상된다. 이와 같은 대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과 대북 경제협력 프로세스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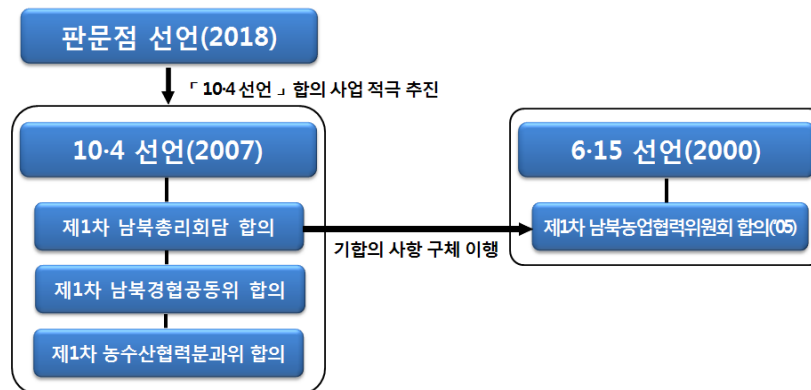
## II. 단기적으로는 과거 합의된 협력사업부터 추진

남북 간 경제협력 이행에 관해서는 이미 4.27 판문점선언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제1조 ①항에서는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으며, ⑥항에서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대북 경제협력에서 농업은 중요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대 남북 교류협력 시기에 농업 분야의 협력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었을 뿐 아니라, 과거 체결된 남북 간 ‘공동선언’이나 ‘합의서’에서도 농업협력을 다양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남북 간의 기존 합의서에서 추진하기로 명시된 농업협력사업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업협력에 관한 리뷰가 필요한 합의서로는 2000년의 6.15 선언과 2005년의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합의서, 2007년의 10.4선언과 이에 후속된 「남북총리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합의서 등이 있다(그림1).

남북 간의 기존 합의서에서 추진하기로 한 농업협력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0.4 선언(2007년)에서는 투자를 장려하는 한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경제특구 건설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농업 분야에 적용하면 농업과 관련 산업의 대북투자가 가능해진다. 2007년 10.4선언에 후속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의 합의서에서는 농업협력사업 추진에 대해

[그림 1] 과거 남북 합의서의 농업협력



자료: 2005~18년 기간 남북 간 「공동선언」 및 「합의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기에는 종자 생산 및 가공 시설 협력, 유전자원저장고 건설 협력, 산림녹화와 병해충 방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또 선행된 합의서에 규정된 농업협력사업도 이행하기로 규정하여, 2005년 합의된 5개 분야의 농업협력사업을<sup>1)</sup>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기도 하였다.

이후 열린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1차 회의와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더 구체적인 분야의 농업협력 추진에 관해 합의하였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수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협력을 추진
- 농업·수산 협력을 호혜적인 방식으로 추진
- 검역 및 방역, 유전자원 교류 및 공동연구, 농업과학기술 교류를 추진
- 종자 생산 및 가공 시설, 유전자원저장고 건설을 조속히 추진
- 검역체계 확립 및 관련 협력 추진
- 과수·채소·잡업·축산 분야 및 농업과학기술 협력 추진

〈표 1〉 기존 남북 간 합의서의 농업협력사업 구분과 내용(2005~07년)

구분	농업협력사업의 구성	근거(합의서)
협동농장 협력	육묘시설, 농업기자재, 배합사료 지원 영농기술 지원	남북농업협력위원회(2005)
종자 관련 협력	현대적 종자 생산 시설 지원 종자 가공·보관·처리 시설 지원	남북농업협력위원회(2005) 남북총리회담(2007) 농수산협력분과위(2007)
농업과학기술 협력	우량 유전자원 교환 및 공동연구 유전자원저장고 건설 육종 및 재배 기술 협력 생물농약 개발 및 생산기술 협력 농작물 생육 예보, IPM 기술 협력 검역·방역 기술 협력	남북농업협력위원회(2005) 남북총리회담(2007) 남북경제협력위원회(2007) 농수산협력분과위(2007)
개별 분야 협력	축산·과수·채소·잡업·특용작물 분야 협력	남북농업협력위원회(2005) 농수산협력분과위(2007)
산림 협력	양묘장 조성,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복구녹화	남북농업협력위원회(2005) 남북총리회담(2007)
투자 장려	수출·투자 확대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 협의 (농업 및 관련 산업의 대북투자 가능)	10.4 선언(2007) 남북경제협력위원회(2007)
서해평화협력지대 경제특구 건설	수출·투자 확대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 협의 (농업 및 관련 산업의 대북투자 가능)	10.4 선언(2007) 남북경제협력위원회(2007)

주: ( )는 명시적으로 조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합의 내용상 추진 가능하며 추진 효과가 높은 협력사업임.

자료: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합의서(2005. 8. 19)」; 「10.4 선언(2007. 10. 4)」;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2007. 11. )」; 「제1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합의서(2007. 12. 6)」; 「제1차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합의서(2007. 12. 15)」.

1) 이는 2005년 8월 19일 개최된 「남북농업협력위원회」에서 합의한 협동농장 협력, 종자 분야 협력, 농업과학기술 협력, 개별 농업 분야 협력, 산림 협력 등 5개 농업 분야 협력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면 농업 부문에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7개 분야에서 22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 간 농업협력사업이 재개된다면 <표 1>에서와 같이 이미 합의된 협력사업부터 다시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이들 협력사업들을 즉시 재개할 수는 없다. 협력사업 실행에는 사전 준비도 필요하고 남북 간에 최소한의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은 2010년의 5.24 조치뿐만 아니라 2016~17년 유엔의 대북제재(2270~2397호)와 미국의 제재조치가 각기 발효 중이다.

현 상황에서는 남·북, 북·미 대화가 더 진전되어 대북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준비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협력사업별 추진 목표, 기대 효과, 하위 프로젝트 내용, 추진 주체, 추진 방식, 추진 규모, 추진 기간, 추진·참여 주체 간 역할 분담, 정부의 역할,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남북 간에는 협의 창구를 만들어 미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농업협력위원회(2005)」와 「남북농수산물협력분과위원회(2007)」의 구성 및 협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 Ⅲ. 증장기 농업협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한편, 남·북, 북·미 간에 비핵화 평화정착이 가시화되고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이 성숙되는 단계에 이르면 평화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농업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대북 농업협력은 여타 대개도국 경제교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농업 부문의 개발협력사업은 북한의 특수성을 반영하되 국제적 표준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개발협력사업이 북한의 경제개발 계획 시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획되어 추진될 수 있다면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정상적인 경제교류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농업 부문의 교류협력도 마찬가지다. 농산물 및 관련 재화의 교역 확대와 농업 및 관련 산업의 투자 촉진이 필요하다. 교역의 확대는 남북 내국 간 경제교류 협정을 체결한 후 제도 내 교역 자유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농업 관련 산업의 초기 투자는 특구 설치를 권장하여 특구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후의 투자는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의 진전에 따라 전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